##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08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 박상혁 · 김남근 · 정일영

최기상 · 임호선 · 김현정

김병기 · 김선민 · 한민수

이연희 · 김남희 · 백혜련

이인영 • 이기헌 • 이해식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개최가 어려움.

과거 코로나를 겪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 가능성에 따라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

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안 제364조의 2 및 제368조의5 신설 등).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4조의2(총회의 개최방식) ① 총회는 주주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원격지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주주(이하 "원격지 주주"라 한다)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이 경우 원격지에서 결의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 통지절차, 원격지주주의 본인확인절차 및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書面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으로 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의4제1항 중 "전자적 방법"을 "주주총회일 이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제3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8조의5(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운영) ① 제364조의2 제3항에 따른 원격지 주주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서명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원격지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를 전자주주총회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원격지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

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지에서 결의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 통지절차, 원격지 주주의 본인확인절차 및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의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l> <li>(신 설&gt;</li> <li>제364조의2(총회의 개최방식)① 총회는 주주총회일에 주주가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li> <li>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출석한 것으로 본다.</li> <li>③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경우회사는 원격지에서결의에참가하는 주주(이하 "원격지 주주"라한다)가 총회의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참가할 수 있도록총회를 직접하게 운영하여야한다. 이 경우의 기원 등 기계 문영하여야한다. 이 경우의 기계 문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계 문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계 문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계 문영하여야한다. 이 경우</li> </ul>	현 행	개 정 안
<u> 원석시에서 결의에 삼가 하기</u>		제364조의2(총회의 개최방식) ① 총회는 주주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원격지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주주(이하 "원격지에서 결의 시 참가하는 주주(이하 "원격지 주주"라 한다)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

# 第368條(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 權의 행사) ① (생 략)

② 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u>書面을</u> 總 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 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 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을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설>

위한 사전 통지 절차, 원격지
주주의 본인확인절차 및 그 밖
에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 령으로 정한다.</u>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
권 행사) ① (현행과 동일)
②
<u>서면 또는 전</u>
자문서를
<b>.</b>
③ (현행과 동일)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u>주주총회일</u>
이전에 전자적 방법
② ~ ⑥ (현행과 동일)
제368조의5(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운영) ① 제36
4조의2제3항에 따른 원격지 주
주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

<u>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u> <u>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권을</u> <u>행사하여야 한다.</u>

- ②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의 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 고자료를 원격지 주주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 ③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판한 법률」 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를 전자주주총회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 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전자주 주총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원격지 주주가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원격지에서 결의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 통지절차, 원격지 주주의 본인확인절차 및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의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